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475 (전화 521-8972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보존영구 ⑩ 5.3.1.	기 검
수신처 보존기간		전결
지행일자	86. 10. 12	
보조 기관	주관 주관 주관	합 조 기 관
기안책임자	조근호	86. 10. 12 인
경유 수신 참조	주관참조	발신 명의
제목	도시계획사업 (도선) 설치계획 인가 제안	과 담당자
수신	기부결재	19/13
사무	결재	744

86. 10. 12
 도시계획부
 도시계획과
 도시계획팀

1. 서울특별시 구서로 475호 (86. 2. 11)로
 도시계획 사업 (도선) 결정하고 도시계획 제 495호 (86. 7. 19)
 에 따라 수립 승인된 정밀구 계획 등 14784 ~ 14788
 (B=20^m L=310^m) 선의 ^{50%}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
 인가 요청 서울특별시 공보 제 531호 (86. 9. 23)로
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

원본대조필

1. 이온 교환 수지 : 이온 교환 수지 (2.3)

이온 교환 수지 : 이온 교환 수지 (2.3)에 의한 질량 변화 및
필터링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.

가. 수질 개선 방법 : 이온 교환 수지 (2.3) (2.3) 수지
(이온 교환 수지)

나. 수질의 종류 및 특성 : 이온 교환 수지 (2.3) 수지

다. 수질의 특성 : B=20 ~ L=350 ~

라. 수질 개선 방법 : 수질 개선 방법 (이온 교환 수지)

마. 수질 개선 방법 : 수질 개선 방법 - 1. 1.

수질 개선 방법 - 2. 10. 15

바. 수질 개선 방법 : 수질 개선 방법 (이온 교환 수지)

사. 수질 개선 방법 : 수질 개선 방법 (이온 교환 수지)

아. 수질 개선 방법 : 수질 개선 방법 (이온 교환 수지)

야. 수질 개선 방법 : 수질 개선 방법 (이온 교환 수지)

이온 교환 수지 : (1) 이온 교환 수지 (이온 교환 수지) 1부

(2) 이온 교환 수지 (이온 교환 수지) 1부

(3) 이온 교환 수지 (이온 교환 수지) 1부

이온 교환 수지

수선: 수공예품수선

출근: 사원귀가

제 목: - 관련 칼럼 및 기사선로 부여 ~~작성~~ 요청

1. 처음으로 같이 드디어 ~~작성~~ 사원 (도리) 심사 계획
이기에 다른 기사선로 부여 및 관련 칼럼은 ~~작성~~ ^{작성} 하기로
주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.외.제: 정월+내수등 141764 ~ 141485 2건

제.선.영: 드디어 ~~작성~~ 사원 (도리) 사정

다 배정 근거: 드디어 ~~작성~~ 배정 자료

따르불라: 1) 기사문 사본 1부

2) 사정문 (총무처, 전보부) 2부

3) 원가증 사본 1부 ~~붙~~

제 3 안.

수 선: 총무처 출간

배정: 사정문 배정

출근: 정월 출간

제 목: 관련 기사 ~~작성~~

1. 처음으로 같이 관련 ~~작성~~ 기사 ~~작성~~ 하기로 게재하여

주최. 바랍니다

원본대조필

주. 개회 구분: 2차

주. 차 명: 프로젝트, 수어 (30인) 및 개회식 인가.

주. 배정 근거: 프로젝트 배정 근거

따르불애: 고서문 수분 2부

제 4 단.

수 선: 간외부 장판

회선: 수동등반시장

출 조: 선제개회파장

제 목: 출은전.

1. 수동등반서 개회식 4P5로 (상. 2. 11) 30인

개회식 선(30인) 적용되고 동그서 제 4P5로 (상. 2. 1P)

에 따라 개회식 승인된 것보다 내수등 1차 1264~10

140 (B=200, L=315) 간다 수어에 대하여 수어

수행 인가에 따른 음향등 (수동등반서 등 제 1. 3. 1로

상. 9. 15) 등 완료하고 따르불애 파장이 수행

인가 하인기에 반 합니다

따르불애: 1) 고서문 수분 1부

2) 로 변 1부 등

제 1 단.

수신: 수신처 주소

70장

주소: 서울계곡가길

제출: 같은지

제 4안 이기시행

마르불아: 1) 그사문 수보 / 부

2) 드면 / 부 글

제 6안

수신: 수신처 주소

제출: 같은지

1. 우리구 관내 내수동 14164 ~ 14148

($B=20^m$ $L=30^m$) 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

등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토인) 실시계획 인가 하였기에

통보하니 아무런 찬성 항의

마르불아: 1) 그사문 수보 / 부

2) 드면 / 부 글

발본처: 계무과, 세무 1, 2과, 산업과, 건설관리과

주행과, 승전등거과, 도무과, 내수동 (장)

고 사 문 (2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43호

10.11
10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호 (86. 7. 11)로 도시계획
 시설(도로) 결정되고 동양제 495호 (86. 7. 19)에
 따라 계획 승인된 경관구 내구등 14,1764 ~ 14,1484
 (B=20m L=350m) 간의 시설이 계획에 수반사항
 인가로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 53호 (86. 7. 25)로
 공람 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 23조 및 동법시
 제 23조와 동령 제 6조 1항에 따라 동양에 실시계획
 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함

2. 관계 도시는 경관구청 도시계획부에 비치하여 도시
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함

1986. 10.

서울특별시 상

제 1호 서울특별시 상 = 경관구 내구등 14,1764 ~ 14,1484

(회 인 등 관 양 도 로)

제 1호 서울특별시 상 및 시행 =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

다. 수평의 가로: $B = 20\text{m}$ $L = 310\text{m}$

라. 수평 세로: $B = 20\text{m}$ (정확히 측정)

마. 수평 세로: $B = 20\text{m}$

수평 세로: $B = 20\text{m}$

바. 수평 세로: $B = 20\text{m}$

이외의 세로: $B = 20\text{m}$

사. 수평 세로: $B = 20\text{m}$

다. 수평 세로: $B = 20\text{m}$

